

자본시장 혁신과제 4  
(개인 전문투자자 문호 개방)

---

#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방안

---

2019. 1.

금 융 위 원 회  
자 본 시 장 과

# 목 차

I. 추진배경 .....	1
[참 고1] 개인 일반투자자 참여 시 적용 규제 .....	2
II. 현행 개인 전문투자자 현황 및 평가 .....	3
III. 개인 전문투자자 개선 방안 .....	5
IV. 향후 계획 .....	8
V. 기대 효과 .....	9
[참 고2] 금융투자상품별 위험도 판단 기준 .....	10
[참 고3] 개인 전문투자자·개인 전문투자자 비교 .....	11

## I. 추진 배경

-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를 구분하고 별도 규제체계를 적용 중
  - 은행, 보험 등 금융기관, 상장법인, 지자체 등 기관투자자로 규정할 수 있는 기관은 전문투자자로 분류하고,
  -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한 금융투자상품 판매는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와 「투자권유 준칙」 의무를 면제 (☞참고 1)
    - \* ①(적합성 테스트) 투자자 상황(위험 감내능력 등)에 적합한 투자만을 권유
    - ②(설명 의무) 상품의 내용, 위험 등을 투자자에게 이해가능토록 설명 필요 등
- 개인투자자는 원칙적으로 일반투자자이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
  - ①보유 자산이 많은 등 손실감내능력이 충분하고 ②금융 관련 경력 등으로 투자 위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개인 전문투자자에게 개인 일반투자자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비효율적
  - 미·EU 등 해외의 경우에도 순자산, 금융지식 등을 기준으로 일부 개인투자자를 전문투자자로 인정하고 완화된 규제 적용 중
    - \* (미) 순자산 1백만불 초과 개인 등, (EU) 금융투자잔고 50만유로 초과 등
-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손실감내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투자자」群을 적극 육성할 필요
  - 장기의 투자 기간과 투자 리스크가 큰 비상장 기업 투자의 경우 위험감수능력을 보유한 「전문투자자」 참여가 적합
  - 비상장 기업 등의 경우도 전문투자자들만 참여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규제가 면제되어 용이하게 자금조달이 가능

## 참고 1

## 개인 일반투자자 참여 시 적용 규제

- ◇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위한 ①증권신고서 제출 의무와 ②투자자 보호규제를 적용
  - 전문투자자에게 금융투자 상품 판매 시 ②투자자 보호규제가 제한적으로 적용

### 1.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 전문투자자 + 개인 일반투자자 모두 적용

- 50인 이상의 개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증권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공모」 발행으로 발행인은 증권신고서 제출 필요

### 2. 투자권유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규제 : 개인 일반투자자만 적용

#### ① 적합성 원칙 (Know your customer rule)

-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의 상황에 적합한 투자만 권유해야함
  - \* 투자자에 대한 **재산상황** 등을 파악하고 해당 투자자에게 **부적합한 투자 권유**를 못한다는 원칙

#### ② 설명 의무

-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 권유 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위험, 수수료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하고,
  - \* 상품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등
-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함

#### ③ 적정성 원칙

- 투자 권유행위가 없더라도 일반투자자에게 파생상품 등 일부 고위험상품 판매 시 투자자의 **재산상황** 등 정보를 파악하고,
  - \*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펀드 자산의 50% 이상을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펀드 등
- 해당 파생상품 등이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리고 투자위험 등을 고지해야함

## II. 현행 개인 일반투자자 현황 및 평가

### 1. 현행 개인 전문투자자 제도 현황

- (요건) 일반투자자 중 i) 투자경험이 충분하고, ii) 손실감내 능력이 있는 투자자를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
  - i) (투자 경험)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이면서 금융투자계좌를 1년이상 보유할 것
  - ii) (손실감내능력) 年소득액이 1억원 이상 또는 총 자산이 10억원 이상일 것
- (절차) 개인 전문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투자경험과 손실감내 능력의 증명 서류를 갖추어 금융투자협회에 등록 필요

### 2. 개인 일반투자자의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 관련 해외 사례

#### < 미국 >

- (요건) 손실감내능력과 투자경험 등을 기준으로 아래의 요건 충족 시 개인 전문투자자로 분류 (SEC Rule 501(a))
  - i) 은행, 보험 등 기관투자자, ii) 발행회사의 이사, 대표 등
  - iii) 순자산(부부합산 가능)이 1백만달러를 초과하는 개인  
(거주중인 주택가액 및 이를 담보로 한 대출금은 순자산 산정시 제외)
  - iv) 연소득이 단독 20만달러(부부합산 시 30만달러) 초과 개인

※ (참고) 전문투자자 확대 법안이 상원 계류중(하원 통과)

\* The Fair Investment Opportunities for Professional Experts Act (S. 2756,)

○ (주요 내용) 교육수준 또는 직무경험을 통해 특정한 투자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verify)한 경우도 전문투자자로 인정

\* 재무·회계 관련 고급학위 취득자, 관련 분야의 면허·자격증 취득자 등을 구체적인 전문투자자 인정사례로 제시

- (절차) 전문투자자 해당여부 판단은 판매회사에서 담당하며 영업망이 적은 중소기업사는 전문 서비스회사\* 등을 이용

\* 전문투자자 인증 대행 서비스 회사, 협회 등 이와 유사한 수준의 기관

## < 유로존 >

□ (요 건) 아래 요건 중 2가지 이상 충족시 투자회사는 해당 고객을 개인 전문투자자('Elective' professional client)로 취급 가능

- i) 금융상품 잔고 50만유로(약 6.5억원) 초과
- ii) 해당시장에서 지난 4분기동안 분기 평균 10회 이상 거래
- iii) 금융 분야에서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직에서 1년 이상 근무 경험

□ (절 차) 개인 전문투자자 해당여부 판단은 판매회사에서 담당

### 3. 국내 개인 전문투자자 제도에 대한 평가

□ (요 건) 투자경험 관련 요건이 선진국에 비해 엄격하고 전문가 등이 개인 전문투자자로 진입할 수 있는 경로가 불비

- i) (투자 경험) 금융투자상품 잔고를 기준으로 1년 이상 5억원 이상을 유지 필요

- 미국의 경우 투자경험 관련 요건이 없고 유로존은 금융투자상품 잔고의 기간 요건을 두지 않음

- ii) (전문가) 외국사례와는 달리 금융 관련 전문지식 보유자를 전문투자자로 인정하지 않음

\*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지식 및 거래경험을 갖춘 투자자를 개인 일반투자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대우

□ (절 차) 번거로운 등록절차로 활용이 제한되는 문제

-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 등 관련 요건이 충족했음에도 협회 등록절차 등으로 전문투자자로 지정되는데 불편

\* 미, EU 등 해외사례의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직접 또는 전문투자자 대행 서비스 회사가 전문투자자 인정여부 등을 결정하여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에 용이

※ ('18말 기준, 전문투자자) 총 2,648명에 불과(개인 1,943명 / 법인 704개)

### Ⅲ. 개인 전문투자자 관련 개선방안

- ◇ 비상장 혁신기업 등 투자 위험이 높은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험감내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군 육성이 필요
- 미·EU 등 해외사례를 고려하여 전문투자자 요건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다양화
- 규제 개선에 대응하여 투자자 피해가 없도록 전문투자자 관련 증권사 등의 사후책임은 강화

	현행	해외 사례	개선
진입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경험) 금융투자 잔고 5억원 이상 등</li> <li>■ (손실감내) 소득 1억원 이상 or 재산 10억원 이상</li> <li>■ (전문가) 인정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투자경험 불요</li> <li>■ (EU)잔고 50만유로 등</li> <li>■ (미)연소득20만달러 이상</li> <li>■ (EU)손실감내능력 불요</li> <li>■ (미)관련법 상원 계류중</li> <li>■ (EU)전문가 인정</li> </ul>	<p><b>&lt; 요건 완화 &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경험) 초저위험 상품 제외 잔고 5천만원 이상</li> </ul> <p><b>&lt; 요건 정비 &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실감내) 부부합산 소득 신설(1.5억원) or 재산 5억원*</li> <li>* 주거 중인 주택 제외</li> </ul> <p><b>&lt; 요건 신설 &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호사 등 전문가 요건 신설</li> </ul>
등록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투자협회 등록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매회사, 전문서비스 기관 등이 담당</li> </ul>	<p><b>&lt; 등록주체 개선 &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투자업자가 등록</li> </ul>
투자자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투자자 관련 제재 조항 없음</li> <li>*요건을 미충족한 개인 일반투자자를 전문투자자로 대우한 경우 설명의무 불이행으로 제재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매금액을 상회하는 손해배상책임 등 행정제재 보다는 사인간 분쟁으로 해소</li> </ul>	<p><b>&lt; 요건 신설 &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투자자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제재조항 신설</li> </ul>

※ 진입은 투자경험을 전제로 손실감내능력이 있거나 전문가이면 가능(2-track)

① (진입 요건) 투자경험 + 손실감내능력 요건을 개선하고  
금융관련 전문 지식보유자를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

i) 투자경험 요건을 완화하고 손실감내능력 요건 정비

- 금융투자상품 계좌 판단 기준을 현행 잔고 5억원 이상에서 초저위험 상품\*을 제외한 5천만원 이상으로 완화

\* 투자권유 준칙에 따라 투자자는 총 5단계(안정형 ~ 공격투자형), 금융투자상품은 총 5단계(초저위험 ~ 초고위험)으로 구분되며 안정형 투자자의 경우 초저위험(국고채, MMF, RP 등)에 대해서만 투자권유 가능(☞ 참고2)

- 소득 인정기준 내 부부합산 조건을 추가하고 재산가액 기준을 주거 중인 주택을 제외하고 순자산 기준으로 개선

< 계좌 잔고 및 소득 기준 개선안 >

	현행	개선
투자경험	금융투자상품 계좌를 1년이상 유지하고 잔고가 5억원 이상	금융투자상품 계좌를 1년이상 유지*하고 초저위험 상품을 제외한 잔고가 5천만원 이상 ·초저위험상품 : MMF, RP, 국고채, 통안채, 보증채 등
손실감내능력	① 직전년도 소득액 1억원이상 ② 재산가액 10억원 이상	① 직전년도 소득액 1억원(개인) 또는 1.5억원(부부합산) ② 순자산* 5억원 이상인 가구의 가구원 * 주거 중인 주택은 제외

\* 최근 5년 중 1년 이상의 기간의 잔고 유지인 경우 가능

ii) 투자경험\*이 있는 금융관련 전문 지식보유자를 전문투자자로 인정

\* 금융투자상품 계좌 1년이상 유지하고 초저위험 상품 제외, 5천만원 이상일 것

- (국가 공인자격증 보유자) 회계사·변호사·변리사·세무사·감정평가사, 총 5개 자격증\* 보유자

\* 자본시장법상 청약권유 불포함 대상으로 지정된 전문 자격증 기준

- (전문자격증 보유자) 자본시장법상 자율규제기관이 관리하는 투자운용\*·금융투자상품\*\*·금융투자업 영위를 위한 인적요건\*\*\*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격증 보유자

\* 자본시장법 제51조 투자운용인력자격 요건 등

\*\* 자본시장법 제263조 : 채권평가회사의 금융투자상품 분석을 위한 자격요건

\*\*\* 금융투자업 규정 별표 2 : 금융투자업자의 위험관리전문인력 수행을 위한 자격요건

※ 금융위에 등록된 민간자격은 총 110개(66개 기관)이나, 법상 근거가 있고 전문 요건을 갖춘 자격은 투자권유자문, 투자운용, 금투상품 분석이 유일

- (금융투자업 종사자)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중 관련 직무 종사자

\* (전업) 증권·선물·자산운용·투자자문·일임·신탁사 임직원 중 금융투자업 직무 종사자, (겸업) 은행·보험 등 겸영업자 임직원 중 금융투자업무 수행을 위해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직무 종사자 → 후선업무 제외

## ② (절 차)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 절차를 협회에서 금융투자회사로 전환

- 개인 전문투자자가 등록절차 등의 불편 해소를 위해 금융투자회사가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을 심사토록 개선

- (요건 심사회사 범위) 위험관리 평가 등 추가의무\*가 적용되는 자산 1천억원 이상의 금융투자업자

\* 자본시장법 제31조에 따른 자산 1천억원 이상의 금융투자업자(장외파생 투자매매업 또는 인수업 영위 증권사)는 금감원의 위험관리 수검의무, 위험관리 전담조직 설치 의무 등의 추가 의무를 부담 → 현 46개사(총 증권사 55개)

- (전문투자자 정보 공유)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 심사 권한이 없는 금융투자업자\*가 전문투자자 대상 영업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전문투자자에 대한 정보 공유

\* 자산 1천억원 미만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사모펀드 운용사 등

■ (정보공유 방안\*) 금융투자협회 또는 별도 공유시스템 마련

\* 시행령 개정 효력 발생일 시점에 맞추어 시스템 운영 실시

\*\* 전문투자자 갱신 기한(現 2년)을 폐지하고 기 등록된 전문투자자는 유지  
(일반투자자로 전환 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전환)

---

③ (투자자 보호) 전문투자자 심사 관련 사후책임 강화 등  
투자자 보호 조치

---

○ 개인투자자는 전문투자자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문투자자로 전환

○ 증권회사의 부적절한 전문투자자 요건 심사를 불건전 영업 행위\*로 규정하여 위반시 엄격하게 제재\*\*

\* i) 투자자 의사에 반하여 전문투자자로 전환하는 행위

ii)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알고 있음에도 전문투자자로 전환 시

iii) 전문투자자 전환을 전제로 고위험 상품 등을 투자권유 준칙을 준수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등

\*\* 현재 적정성·적합성 원칙 위반의 경우 제재규정 없음, 설명의무 불이행시에는 과태료(1억원 이하)가 되며 불충분한 설명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부과 → 전문투자자 관련 불건전 행위에 대한 과태료 신설

---

## IV. 향후 계획

---

□ 금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추진  
(1월 중 입법예고)

## V. 기대 효과

◇ 비상장 기업 등 고위험 투자의 감내능력을 통해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군이 대폭 확대 (약 37~39만명)

- 투자경험 및 손실감내능력 요건 갖춘 개인투자자(약 15~17만명), 자격증 보유자 등 금융관련 전문 지식 보유자(약 22만명) 등 총 37~39만명이 전문투자자 후보 Pool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

< 전문투자자 확대 기대효과 (추정) >

구분	요건 충족자수	비고
<b>① 소득·자산요건</b>		
투자경험 및 손실감내능력	약 15~17만명	-
<b>② 전문지식 보유자</b>		
금융투자업 종사자	약 7.9만명	'18.9.30 기준
변호사	2.5만명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기준
회계사	2.0만명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원 기준
변리사	0.4만명	대한변리사협회 회원
세무사	1.3만명	한국세무사회 회원 기준
감정평가사	0.5만명	한국 감정평가사협회 회원 기준
금융 자격증 소유자	6.6만명	투자자산운용사 시험
	0.3만명	금융투자분석사 시험
	0.4만명	재무위험관리사 시험
<b>합계</b>	약 37~39만명	-

\* 소득 1억원 이상 등의 변호사를 감안하면 추정치는 축소될 수 있음

◇ 전문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통해 비상장기업 등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기능 활성화

- 모험자본 투자가 가능한 전문투자자 Pool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 강화
- 전문투자자 투자 성향(High Risk, High Return) 등에 적합한 비상장 혁신기업 등의 자금 조달기회가 확대되는 여건 조성

## 참고 2

## 금융투자상품별 투자 위험도 분류기준

### ① 금융투자상품별 투자위험도 분류기준 (협회 표준준칙)

- 금융투자업자는 상품별 위험도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협회 표준준칙과 대동 소이한 수준

구 분	초고위험 (Speculative Risk)	고위험 (High risk)	중위험 (Intermediate Risk)	저위험 (Low Risk)	초저위험 (Ultra Low Risk)
채 권	투기등급 포함(BB 이하)		회사채 (BBB+~BBB-)	금융채 회사채(A-이상)	국고채 통안채 지방채 보증채 특수채 RP
파생 결합 증권	(ELS, DLS) ELW	원금비보장형 ELW	원금 부분보장형	원금보장형	
주식	신용거래,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	주 식			
집합투자증권	주 식 형		혼합형	채권형	MMF
선물옵션	파생상품펀드 선물옵션				

\* ELF의 경우 ELS와 동일하게 투자위험도 분류

\* 위 기준은 금융투자상품별 투자위험도 분류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금융투자회사는 동 기준을 참조하여 금융투자상품별 실질 내용과 위험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분류

### ② 고객의 투자성향별 투자권유 가능상품 분류기준 (협회 표준준칙)

- 안정형의 경우 초저위험 상품만 권유 가능한 구조

구 분	초고위험 (Speculative Risk)	고위험 (High risk)	중위험 (Intermediate Risk)	저위험 (Low Risk)	초저위험 (Ultra Low Risk)
안 정 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안정추구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위험중립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적극투자형	투자권유불가				
공격투자형					

### 참고 3

## 개인 일반투자자 vs 개인 전문투자자 비교

구분	개인 일반투자자	개인 전문투자자
투자권유 규제	적합성원칙(법§46), 적정성 원칙(법§46의2), 설명의무 (법§47) 적용	비적용
	투자자문·일임계약 체결 전 자료 교부 의무(법§97), 투 자설명서 교부 의무(법§124) 적용	
상품	<p>사모펀드</p> <p>최소 투자금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투자형 : 1억원 이상</li> <li>- 경영참여형 : 3억원 이상</li> </ul>	제한 없음
	<p>과생상품</p> <p>(장내선물·옵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교육(30시간) 및 모의 거래(50시간)를 이수하고, 일정금액(3,000만원) 이상 예탁 의무(과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122)</li> </ul>	<p>(장내선물·옵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이수가 면제되고 기본 예탁금(1,500만원) 적용</li> </ul>
	<p>(장외과생상품)</p> <p>위험회피 목적으로만 투자 가능(법§166조의2)</p>	
	<p>클라우드 펀딩</p> <p>투자자의 투자한도 제한(법 §117조의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기업당 투자한도 : 500 만원(소득요건 구비자 1,000만원)</li> <li>- 연간 총 투자한도 : 1,000 만원(소득요건 구비자 : 2,000만원)</li> </ul>	제한 없음